

청약철회신청서

BNK 투자증권

■ 신청인 인적사항

계좌번호		계좌명	
주소	()		
반환신청 계좌번호	금융기관명	계좌번호 (본인명의계좌 기재)	

※ 반환신청계좌번호가 은행이체약정 미등록계좌인 경우 은행이체약정 신청 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■ 청약 철회 대상

○ (투자성 상품) 청약철회가 가능한 대상상품에 대하여, 아래 1) 또는 2)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.

- 다만, 고객이 예탁한 금전 등을 지체 없이 운용하는데 동의한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
- 청약의 철회는 본 신청서를 작성하여 당사에 서면 등을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.

○ (대출성 상품) 약철회가 가능한 대상상품에 대하여, 아래 1) 또는 2)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.

- 다만, 담보로 제공된 증권이 관련 법에 따라 처분된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
- 청약의 철회는 고객이 본 신청서를 작성하여 당사에 서면 등을 발송하고, 당사로부터 제공받은 금전 등을 당사에 반환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.

청약철회 대상상품	<input type="checkbox"/> 투자성 상품 : 세부사항 기재 가능 <input type="checkbox"/> 대출성 상품 : 세부사항 기재 가능		
1) 계약서류 제공 받은 날	년	월	일
	2) 계약서 체결일 (금소법령에 따라 계약서류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)		년 월 일

■ 고객 확인사항

아래 내용을 확인하고 “확인함” 자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[대출성 상품] 대출계약 철회 신청시, 대출원금과 대출이자 및 부대비용 등의 전액 상환이 완료되어야 철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.	확인함
※ [대출성 상품] 철회의 의사표시 도달 전 담보대상 증권을 자본시장법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에는 철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.	확인함
※ [투자성 상품] 예탁한 금전을 지체 없이 운용하는데 동의하는 등 청약철회권을 포기한 사실이 없습니다.	확인함

※ 본 신청서는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46조에 따라 고객께서 당사에 대하여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입니다.

※ 고객님의 서면, 전자우편,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로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, 그 발송 사실을 지체없이 당사에 알려야 합니다.

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 46조에 따른 청약 철회권의 주요내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: _____ (인)